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유형	파생 한도	결산	변동 성	법개 정
1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투자신탁(H)(주식-파생형)	○	○	-	-	○
2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파생형)	○	○	-	-	○
3	미래에셋우량 KP 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-파생형)	-	○	-	-	-
4	미래에셋우량 KP 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-파생형)	-	○	-	-	-
5	미래에셋우량 KP 채권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-파생형)	-	○	-	-	-
6	미래에셋 EMP 밸런스스타일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○	-
7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-
8	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○	○	-
9	미래에셋슬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-
10	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-	-	○	○	-
11	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지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○	○	-
12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-
13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-
14	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○	○	-
15	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-	-	○	-	-
16	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)	-	-	○	-	-
17	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-	-
18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
19	미래에셋지속가능 ESG 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○	-	-
20	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

## 2. 변경 사항

- 1) 투자신탁 유형 변경
- 2) 모투자신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변경
- 3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5)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일: 2021년 04월 30일(금)

4. 변경 사항:

1) 투자신탁 유형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 자투자신탁(H)( <u>주식-파생형</u> )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 자투자신탁(UH)( <u>주식-파생형</u> )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 자투자신탁(H)( <u>주식혼합-파생형</u> )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 자투자신탁(UH)( <u>주식혼합-파생형</u> )
<모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 모투자신탁( <u>주식-파생형</u> )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 모투자신탁( <u>주식혼합-파생형</u> )
<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>	①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<b>60% 이상</b> 투자합니다.	①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<b>50% 이상</b> 투자합니다.
[제 2 부 별첨 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나. (1) 투자대상	[주식]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 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로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 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※투자비율: 60% 이상	[주식]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 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로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 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※투자비율: 95% 이하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 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(H)( <u>주식-파 생형</u> )”로 한다.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 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투자신탁 2. 증권( <u>주식파생형</u> 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종류형 6. 모자형 ③~④ <생략>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 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(H)( <u>주식혼합 -파생형</u> )”로 한다.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 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투자신탁 2. 증권( <u>혼합주식파생형</u> 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종류형 6. 모자형 ③~④ <생략>

	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 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 <u>주식-파생형</u> )	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 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 <u>주식혼합-파생형</u> 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) 모두자신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 2 부 별첨 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나. (1) 투자대상	[파생상품] <생략> ※투자비율: <u>위험평가액 기준 100% 이하</u>	[파생상품] <생략> ※투자비율: <u>위험평가액 기준 20% 이하</u>
[제 2 부 별첨 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나. (2) 투자제한	[파생상품 투자]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<u>100%</u>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[파생상품 투자]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<u>20%</u>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EMP 밸런스스타일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	2	-	22.52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77	5.39
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3	8.26	11.34
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17	24.31
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4	4	8.73	9.54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6.17	7.11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5.97	18.73
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69	8.49
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7.16	8.29

5)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3 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

	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44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<u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          ③ &lt;생략&gt;  <u>④ &lt;신설&gt;</u></p>	<p><u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          ③ &lt;생략&gt;  <u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